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 개정이력 현황표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

제 정	:	2007. 11. 1
개 정	:	2009. 4. 1
개 정	:	2013. 1. 1
개 정	:	2014. 2. 1
개 정	:	2017. 4. 1
개 정	:	2018. 6. 1
개 정	:	2019. 4. 8
개 정	:	2019. 7. 8
개 정	:	2020. 3. 1
개 정	:	2020. 6. 15
개 정	:	2020. 10. 22
개 정	:	2021. 3. 24
개 정	:	2022. 12.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금강대학교 대학원의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및 금강대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금강대학교에 일반대학원을 둔다.

제3조(학위과정)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0.3.1.><개정 2020.10.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에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하며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6월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10.2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각 과정별로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을 말하며, 과정수료를 위한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6학기이내

2. 박사과정 : 10학기이내

②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③ 삭제<개정 2020.3.1.>

제7조(수업) ①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야간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3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8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입학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2.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0조(입학지원 및 전형) ①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학업계획서, 하위과정 성적), 구술(면접)고사등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3.1.>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 2(입학전공분야) 입학지원자가 지원하는 각 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설 2020.3.1.>

제10조의 3(전공의 변경) ① 입학 후 전공의 변경신청은 동일 학과내에서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수 후 2학기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3.1.>

② 전공을 변경한 학생의 교과목 이수는 변경 후 전공교육과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3.1.>

③ 전공변경은 소속 학과·전공교수 또는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신설 2020.3.1.>

제11조(외국인 전형) ① 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전형으로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편입학) ① 총장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타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학생을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2.><개정 2021.3.24.>

② 각 학위과정별 편입학 지원자격은 동일(유사)계열의 학과 또는 전공자에 한하

며, 본교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편입학 학기에 따른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개정 2021.3.24.>

학위과정	편입학기	전적대학원 이수 학기 수	이수학점
석사학위과정	2학기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3학기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2학기	1학기 이상	9학점 이상
	3학기	2학기 이상	18학점 이상

③ 입학시 타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해당학과(전공)교수회의에서 본 대학원의 교과목으로 선정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0.3.1.>

④ 삭제<개정 2021.3.24.>

⑤ 편입학생은 조기수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 대학원에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신설 2020.3.1.>

제13조(재입학) ① 총장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1년이 경과된 후 1회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다. 단, 재학연한 경과, 성적 미달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③ 재입학자는 제적 전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④ 재입학자에 대한 장학금은 당해년도 기준을 적용한다.

제4장 등록, 수강신청,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4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학기의 횟수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석사과정 : 4학기<개정 2020.3.1.>

2. 박사과정 : 5학기<개정 2020.3.1.><개정 2020.10.22.>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내에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각 호의 학점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0.3.1.>, <개정 2020.6.15>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⑤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일을 2월간 연장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단, 당해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2020.3.1.개정 ><개정 2022.12.27.>

⑥ 제5항에 의한 분할납부 대상자는 정해진 분납기간에 일정금액 이상의 등록금을 납

부하여야 하며, 분납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수업료의 반환) 재학중인 자가 본인의 진로변경,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당사자 부담금)중 해당금액을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다만, 입대휴학자의 경우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대체하며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에게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2.12.27.>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 개시일 전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16조(수업료 감면) 각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수업연한을 만료하고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3.1.>

제17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지정된 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휴학) ① 휴학하려는 자는 지정된 휴학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중에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계속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석사과정 : 3개 학기

2. 박사과정 : 4개 학기

3. 위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과 공무로 인한 해외 및 국내 원거리 파견기간은 2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출산,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학은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의 사유 및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되 그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까지로 한다.<개정 2022.12.27.>

② 휴학기간이라도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복학을 허락한다.

③ 미등록 휴학자의 경우 제1항에 의거 복학 할 시에는 복학당해학기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자퇴) 자퇴를 희망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개정 2020.3.1.>

제21조(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

1.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하지 못한 자
2. 휴학기간이 종료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4.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제5장 교육과정과 수료

제22조(교육과정 및 교과목) ①대학원에서 이수할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학과내 전공별 교육과정표에 의한다.<개정 2020.3.1.>

②전공별 교과목은 석사, 박사과정 모두 최소 1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3.1.>

제23조(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① 학생은 수료전까지 매학기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②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 4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 추천 및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은 최대 12학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3.24.>

제24조(선수과목 이수) ① 대학원장은 비 동일계열 입학생에 대하여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선수과목에 대한 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 이수는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나, 대학원 졸업학점으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5조(국내·외 대학원과의 학점교류) 대학원 재학 중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본인의 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개정 2020.10.22.>

제26조(학위과정 수료) ①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제5조(수업연한)의 조건을 충족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 중 전 과목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에 대해 각각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해당 과목 이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3.24.>

②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학위과정의 수료 시기는 매학기 종료일로 한다.

제6장 학업성적

제27조(학업성적) ①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0.22.><개정 2022.12.27.>

등급	실점	평점
A+	95~100	4.5

A0	90~94	4.0
B+	85~89	3.5
B0	80~84	3.0
C+	75~79	2.5
C0	70~74	2.0
F	0~69	0.0

②총장이 따로 지정하는 선수교과목은 합격(P) 또는 불합격(N)으로 분류하여 표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출에는 제외된다.

제28조(수업출석)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하며 각 과목별 결석 일수가 전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29조(학점취득) 학점은 성적평점 2.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한다.

제30조(재이수)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교과목은 취득한 성적등급에 관계없이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 성적등급 취득과 동시에 그 이전의 성적등급은 무효 처리한다.

제7장 자격시험

제31조(구분)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3.1.>

제32조(외국어시험 및 전공종합시험) 학위청구 논문을 신청 제출하기 전까지 석·박사 과정 학생은 외국어시험 및 전공종합시험을 합격하여야 하며, 시험과목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심사<개정 2020.3.1.>

제33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 또는 당해학기 취득예정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3.1.>

1.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2.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기타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

제34조(학위청구논문제출 승인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충족한 학생은 학위청 구논문제출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개정 2020.10.22.>

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학위청 구논문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제출시 논문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석사과정은 수료후 5년 이내, 박사과정은 수료후 10년 이내에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개정 2020.3.1.>

제35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① 제35조의 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 구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 추천과 학과교수회의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미응시자를 포함

하여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3.1.>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재부여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은 1개학기 이상 등록하고 3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20.3.1.>

③ 위 2항의 취득학점은 총졸업학점 및 평점평균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수료후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으로 별도로 기재한다.<신설 2020.3.1.>

④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후 제출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2년, 박사3년 이내로 한다.<신설 2020.3.1.>

제36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① 학위청구논문심사는 학위논문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나 인접분야의 교수 혹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0.3.1.>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는 3인, 박사학위는 5인으로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는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7조(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보고) 주심은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0.3.1.>

제9장 학위수여 등

제38조 (학위수여)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총장이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과의 공동명의의 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9조 (학위기) ①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1)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② 박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2)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40조(학위수여 등 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장 명예박사학위

제41조(수여자격) 우리나라의 문화창달과 학술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2조(수여절차)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43조(명예박사학위 종별)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본 학칙 제38조에 의한다.

제44조(학위기)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3)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11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45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6조(연구생)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 중 연구생으로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20.3.1. >

② 연구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소정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연구생은 총 석사과정 6학기이내 박사과정 10학기이내의 재학년한을 가지며, 기숙사, 도서관 등 학교의 시설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0.3.1. >

제46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내 등록생) ① 대학원 수료 후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등록생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0.3.1. >

② 연구등록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구등록비(학기당 수업료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5>

③ 연구등록생은 기숙사, 도서관 등 학교의 시설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0.3.1. >

제46조의 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초과 등록생)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초과한 자가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미응시자를 포함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는 해당학기부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등록하여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응시 포함 논문지도와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하며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3.1. >

② 1항의 등록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구등록비(학기당 수업료의 33%)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6.15. >

③ 연구등록생은 기숙사, 도서관 등 학교의 시설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0.3.1. ><개정 2020.6.15>

제12장 장학금, 상별

제47조(장학금, 연구보조금)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상별) ①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이를 징계처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장 학생활동

제49조(학생회) ① 대학원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대학원에 학생회 또는 원우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 및 원우회의 운영 및 회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장 대학원위원회

제50조(설치)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3.1. >

제51조(구성 및 소집) ① 위원회 구성은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대학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불교학과 전임교수를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개정 2020.3.1. >

②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3.1. >

제52조(임기) 위원(당연직 위원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20.3.1. >

제53조(기능) ①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위과정·학과(부)·전공의 설치·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로 성립하고 심의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장 학칙 개정

제54조(학칙개정) 학칙 개정은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신구대비표로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대학원 홈페이지에 7일 간 사전공고하고 의견수렴 후 대학평의원회와 교무위원회(사안에 따라 법인이사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개정 2020.3.1. >

제54조의 2(학칙의 공포) 학칙의 개정 공포는 규정관리 부서에서 관계서류(교무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신설 2020.3.1. >

제16장 기타

제55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6조(세부사항)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내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2017년 4월 1일자 개정 이전의 사회복지불교학과 재학생, 수료생 중 불교학 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소속은 불교학과로 변경된 명칭을 적용한다.
② 2017년 4월 1일자 개정 이전의 사회복지불교학과 재학생, 수료생 중 사회복지학 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소속은 기존의 사회복지불교학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전의 입학생들의 수업연한은 석사 2년, 박사 2년으로 정한다.
②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후의 입학생들의 수업연한은 석사 2년, 박사 3년으로 정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제51조(구성 및 소집)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46조 ②)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전공명칭변경) ① 불교사전공 및 응용불교학전공은 지속가능발전불교학전공(SDB)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② 이 학칙개정 이전의 불교사전공 및 응용불교학전공은 재적생 및 수료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이 학칙개정 이전의 불교사전공 및 응용불교학전공에 소속된 학생은 재적을 유지하되 2020학년도 후기 입학생과 같은 학기에 재적하게 될 경우 지속가능발전불교학전공(SDB)으로 재적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지속가능발전불교학전공(SDB)은 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시기부터 적용한다.

나. 제22조(교육과정 및 교과목) 2항은 202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2항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후의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전의 입학생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14조(등록), 제35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제46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내 등록생), 제46조의 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초과 등록생)을 적용한다.

라.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2항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은 2019년 4월 8일자 학칙 개정 이후 입학생, 학칙 개정 이전 재학생, 수료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나. 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2항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46조의 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초과 등록생)을 적용한다.

3.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전공 폐지 및 명칭변경)

1) 이 학칙개정 이전의 지속가능발전불교학전공(SDB)은 폐지한다.

2) 불교복지학전공은 불교복지상담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나. (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이 학칙개정 이전의 불교복지학전공 재적중인 학생은 불교복지상담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 이 개정학칙 제5조(수업연한)1항, 제14조(등록) 3항은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후의 입학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라. 이 개정 학칙 제27조(학업성적)1항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23조(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2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이 개정규정 제15조(수업료의 반환)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나. 이 개정규정 제27조(학업성적)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 처리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별표 1〉

대학원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

학 과	세부전공	입학정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불교학과	불교교학/ 불교복지상담학	10	5

〈별표 2〉

대학원 학과 및 전공별 수여학위

학 과	세부전공	학위명	
		석사	박사
불교학과	불교교학/ 불교복지상담학	문학석사	철학박사

〈별지서식 1〉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대학원 불교학과 ()학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제출한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어 문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금 강 대 학 교 대 학 원 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문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금 강 대 학 교 총 장 (학위) 인

학위번호 : 금강대 (석)

〈별지서식 2〉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대학원 불교학과 ()학전공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제출한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어 철학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금 강 대 학 교 대 학 원 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금 강 대 학 교 총 장 (학위) 인

학위번호 : 금강대 (박)

